

東·西獨 환경협정서

➔ 이 자료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간의 환경협정서로써, 앞으로 남·북한간의 환경문제로 인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때의 참고문헌이 될 것 같아 게재한다. <편집자 註>

협 정 (Vereinbarung)

이 협정은 서독정부(독일 연방공화국)와 동독정부(독일 민주공화국)간의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서로의 역할에 대한 협정이다.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서독과 동독간의 관계에 대한 협정에 기초를 두고
- 환경보호구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개발 및 장려할 것과
- 유럽에서의 공동활동과 안전에 대한 회의의 결과, 1979년 겐프에서와 1985년 헬싱키에서의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한 약정 및 1984년 뮌헨 환경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환경보호에 효과있게 기여하고
- 유럽에서의 평화의 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하여 공헌할 것을 자각한다고 협약했다.

제 1 조

양측은 환경보호에 대한 선택된 관심사에 공동노력을 추진한다. 그 노력은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공동노력에는 다음 사항이 중요시된다.

-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삭감을 위한 기술 및 대책
- 삼림피해의 원인과 피해감소를 위한 대책
-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재이용 및 무해한 처리
- 자연보호구역에서의 경험과 대책
- 수자원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술, 경험, 대책

이러한 사항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 전문과 학적인 준비, 전문가의 교환 및 과학적·기술적 정보의 연구결과 등의 교환등이 배려된다.

제 3 조

서독의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청과 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청 간에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사업계획에는 특히 정보 및 경험교환에 구체적인 테마 즉, 수시로 준비기간과 준비된 참가자의 수가 포함된다.

제 4 조

본 협정의 관철을 위하여 요구되는 표결은 서독의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청과 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청이 행하게 된다.

앞의 부서에 의해 때때로 수임자가 지명된다. 특별한 단독문제는 관할권이 없는 측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으며 조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양측은 공동노력의 결과를 서로의 협의하에서 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보호된 정보의 이용은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



다.

제 6 조

1971년 9월 3일의 4국 동맹에 따라 본 협정은 정해진 방법에 동의하여 서베를린까지 확장된다.

제 7 조

다른 규정을 환경보호구역에서 단독문제를 손댈 수 없다. 이것은 서베를린과 동독 사이의 규정에도 적용된다.

제 8 조

앞의 협정은 5년을 위해 체결되었다. 그의 유효기간은 때때로 계속 5년 연장되고 양측중 한 측이 본 협정을 늦어도 종료 3개월전에 문서로 해약통보 한 때는 연장하지 않는다.

제 9 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 3조에 따른 이 사업계획은 수입자의 공동의 조서를 통해 제 4조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1987. 9. 8

서독대표

Prof. Dr. Klaus Töpfer

동독대표

Dr. Hans Reichelt

Prof. Dr. Töpfer 장관의 설명

「환경·자연보호·방사선안전청 장관 Prof. Dr. Töpfer는 1987년 9월 8일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관계에 대한 협정의 조인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오늘 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청 장관인 Dr. Hans Reichelt와 함께 본에서 서독 수상과 동독 서기장 호네커가 참석한 자리에서 양측 정부의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관계에 대해 서명했다.

본 협정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아울러 수입자인 우리 두 장관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동노력을 위한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그것 역시 오늘 체결되었다.

본 협정은 모든 중요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서독과 동독간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동노력의 핵심은 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가능한한 정책과 대책, 공동토의에 있다.

이 목표지향적인 정책은 현존의 정책과 사회 구조에 결합되어 좌우되지 않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서로의 책임의식속의 역사적인 도전에 상응한다. 우리의 공동노력을 즉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는 벌써 양측에 거론되었다. 공동노력은 공기정화의 범위, 수자원보호, 폐기물처리, 삼림피해의 문제점이 중요시 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 앞서의 경험과 정보교환의 범위는 준비된 환경보호의 생각에서 특히 환경부하대책의 중요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서독에서 개발된 고도의 환경기술이 동독에서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우리의 특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동독의 어떤 지역에는 그 원인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적용하게 된다. 인간의 관심과 다가오는 세대에는 우리의 환경부하를 가능한한 계속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은 한계가 없는게 아니다.

단지 근면하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존재가능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분업의 마음에서는 공동노력은 행하지 않는다. 수시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정과 대책을 위하여 공동으로 숙고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핵심부에 있는 독일내의 두 국가는 이것을 위하여 공동운영체로 특별한 공동의 책임은 동독과 함께 공동노력을 위한 첫 기초로서의 본 협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서독정부는 동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이 토의는 소련과 CSSR 사이에도 체결되었



다. 서독정부는 또한 올해안에 이들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공동노력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소련 자연환경의 연방수리수문위원회 의장인 Prof. Dr. Izrael 과 CSSR의 연방과학기술개발 및 투자위원회 의장겸 CSSR 국무총리인 Dr. Obzina 를 협정의 조인을 위해 본으로 초청했다. CSSR 과의 환경협정의 조인 및 소련과의 환경협약을 위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독과의 환경협정체결 때 나는 내 동료인 Dr. Reichelt 와 갖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에는 웨라강과 엘베강의 매립지 문제와 제지공장의 찌꺼기, 공동의 자연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고찰도 포함되었다.

협 정 (Abkommen)

이 협정은 서독정부와 동독정부간의 방사선 보호구역에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에 대한 협정이다.

서독정부와 동독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 1972년 12월 21일의 양측간의 관계의 근거에 협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 방사선 사고시의 조속한 통지를 위하여 1986년 9월 26일의 약정(제 9조, 상호 관심사의 요구)의 사용과
- 국제 원자력기구의 범위내에서의 공동노력의 확실한 원칙의 동의 및
- 방사선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인원, 주거하는 주민 및 방사선 위협으로부터의 환경을 보전할 가장 가능한 보호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했다.

제 1 조

1. 양측은 방사선 사고시 조속 통보한다는 1986년 9월 26일의 협정 제 1조에 따라 사고에 대하여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 보고는 방사선 사고시의 조속한 통보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26일의 협정 제 5조의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 2 조

양측은 제 1조 제 1항의 경우를 상대지역에 매우 높게 측정되어진 방사능에 대해 서로 같은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 3 조

1. 양측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 개발, 법적기초와 방사선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인원, 주민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 보호감독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 양측은 그들의 핵반응과 핵연료시설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서로 통보한다.
3. 제 2항에 따른 정보자료는 국가적으로 허가, 또 계획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되어진다. 양측은 계획된 시설의 운전을 위하여 핵기술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제 4 조

1. 본 협정의 시행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때 일년에 최소한 한번의 주기로 개최된다.
2. 대화의 내용과 교환된 논거는 제한없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나아가 제공된 정보나 논거는 양측의 협조하에 제 3자에게 제공되어 질 수 있다.

제 5 조

본 협정의 기초하에 서로의 정보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용을 위하여 양측은 상환요구를 않는다. 논거의 제공은 의뢰한 측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6 조

1971년 9월 3일의 4국 회답에 따라서 이 협정은 결정된 방법으로 서베를린에도 적용된다.

제 7 조

1. 본 협정은 각서의 교환을 통해 양측에 알리



- 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협정의 변경과 보완은 양측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3. 동봉된 시설은 본 협정의 구성요소이다.
 4. 본 협정은 무제한의 시간으로 체결된다. 각측으로부터 6개월내에 서면으로 협약통지를 할 수 있다.

1987. 9. 8 본에서

서독대표

Prof. Dr. Klaus Topfer

동독대표

Prof. Dr. Georg Sitzlack

시 설

제 3조 제 2항에 따라 통보될 정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시설명
- 주 소
- 소유자
- 사용자
- 목 적
- 시설의 주요항목
- 현재의 상태
- 사용방법
- 소재지에 대한 서술

핵반응기를 위하여는 특별히 다음의 중요항목이 제시된다.

- 반응기 형태 (type)
- 출 력
- 분열지역 (기하학, 연료, 부하, 순도높임, 연소로 인한 중량의 감소, 출력밀도)
- 반응통제 및 반응조정
- 반응기
- 냉각물질 및 냉각수회전 (첫번째, 두번째)
- 증기발생기
- 환경내에서의 방사능 반응물질의 허용량
- 안전장치의 종류
- 안전시스템

환경, 자연보호, 방사선안전청장관의 해설

1987년 9월 8일에 본에서는 서독과 동독정

부간에 방사선 보호구역에서의 정보 및 경험교환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했다.

서독을 대표하여 환경성 장관 Prof. Dr. Klaus Topfer가, 동독의 대표 하여는 방사선 보호, 원자력 안전청 장관 Prof. Dr. Sitzlack이 서명했다.

서독의 동독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은 1982년 시작되었다.

첫번째 대화는 1983년 10월 25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토의는 약 4년간의 시간을 위해 진행되었다. 즉, 1987년 8월 4일 위원회 의장을 통해 협약내용의 조인이 종결되었다.

협약은 핵시설의 사고시 조속한 통보를 위하여 국제 핵에너지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은 체르노빌 사고의 결과로서 이미 1986년 9월 26일 필수적인 양측의 협정을 포함한다.

그것을 위하여 현저히 높은 방사선값은 서로 통보하며 그 값은 핵사고 또는 그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아니한다.

계속된 공동노력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협정 제 3조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하여 교환된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위한 모든 전제조건은 핵기술 안전지역과 방사선 보호구역에서 존재한다.

즉,

- 법적기초를 포함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공동의 개발
- 주민의 환경과 방사선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방사선 보호감독의 방법과 결과
- 사용된 방사선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핵 기술 장비

서독정부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분야에서의 한계를 초과한 공동노력의 가능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양국간에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우호적인 공동노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을 감사한다. *